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매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효력요건은 이미 ㉔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㉕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편 ㉖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㉗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㉘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의 예로는, 징계해고로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휴직으로서의 효력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징계휴직으로 전환하여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㉙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㉚부인된다.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㉛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법률행위가 유효했다라도 어떤 사유에 의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 ②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③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하려면 해당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을 이전에 갖추어야 한다.
 - ④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가 이행된 경우 수령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가진다.
 - 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해당하여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장이 가능하다.
2. ㉗, 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은 성립요건은 충족하나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② ㉘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되어 법률행위의 효력이 다시 발생된다.
 - ③ ㉗과 ㉘ 모두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아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부재한 상태이다.
 - ④ ㉘은 ㉗과 달리 효력요건을 갖춰 법률행위가 유효했던 기간이 존재한다.
 - ⑤ ㉘은 ㉗과 달리 특정인의 취소 주장이 있어야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갑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증서를 남겼다. 하지만 갑의 사망 후 이 유언증서는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증서인 ㉡ ‘자필서명에 의한 유언’의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갑이 자신의 유언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형태의 유언증서를 남겼을 것이라 보아, ‘자필서명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① ㉠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로서의 효력은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군.
- ② ㉠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지만 ㉡는 성립요건이 충분하게 된 것이군.
- ③ ㉠에서 불충분했던 효력요건이 ㉡의 효력요건은 모두 충족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었군.
- ④ ㉠이 ㉡로 바뀌어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었군.
- ⑤ ㉠이 무효가 되었지만 ㉡의 효력요건은 갖추고 있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는 사례이군.

4.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인으로 인해 무효행위의 유효조건이 보충되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한 시기와 추인의 과정을 통해 효력을 얻게 된 시점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의 조건에 부합하여 효력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의 법률행위와의 충돌하여 법질서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④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 추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소급하여 추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효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은 충족하였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처음부터 유효하지 못한 행위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돌릴 수 있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짐.
- ② ㉡: 효험을 나타내는 능력.
- ③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 ④ ㉣: 어떤 내용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⑤ ㉤: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줌.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매매 계약, 유언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한다.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며,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편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의 예로는, ㉡징계해고로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휴직으로서의 효력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징계휴직으로 전환하여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요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된다.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제시된 설명의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설명	판단	
		옳다	그르다
㉠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	
㉡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효력요건을 충분히 갖추게 된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지위를 갖는다.	○	
㉢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행위는 효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모두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일단 유효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행위에 따른 법적 의무는 모두 효력을 잃게 되지만 기간 내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a. ㉠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가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b. ㉠과 ㉢은 모두 기존의 효력이 없던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c. ㉢은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적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항을 두고 있다.

d. ㉢은 이전에는 유효한 법률행위였지만 어떠한 사유로 무효와 같이 효력을 잃게 된 것으로, 효력요건을 보충하면 다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① a, c
- ② a, d
- ③ b, c
- ④ a, b, c
- ⑤ b, c, d

8.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 ㉔와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징계해고조치의 효력을 다시 발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② 징계해고조치의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③ 징계해고조치의 부족한 효력조건을 추후에 보충하여 효력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 ④ 당사자가 징계해고조치가 무효임을 알았다더라면 징계휴직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⑤ 징계해고조치의 법률행위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씨는 땅을 분양받아 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으로 매수인 B씨를 만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처음 땅의 면적이 여러 차례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계약 변경이 수차례 생기게 되었다. 또 언제부터인가 B씨는 A씨에게 필요한 지분은 주지 않은 채 매수대금을 더 올려 받고 싶어했다. 이에 A씨는 결국 매매 계약을 해제하여 지금까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에 계약 해제의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장을 보낸 상태이다.

- ① 계약이 해지된다면 해당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도 생기지 않아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낼 의무가 사라져.
- ②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A씨의 무효 취소 주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효력을 영원히 잃게 할 수 있어.
- ③ 계약이 해지된다면 B씨는 이미 A씨에게 지급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
- ④ 계약이 해지된 후 A씨가 반환청구권을 소멸시효 내 주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 ⑤ 계약이 해지된다면 매매 계약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A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10. <보기>는 ㉓에 대한 심화 학습 자료이다. 윗글과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사례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민법 제 139조

‘당사자가 의욕했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후에 취소가 가능한 행위에 대해 그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사 례> —

A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상가건물을 B씨에게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당시 A씨가 제시한 금액은 시세보다 저렴했고 B씨는 기회라 생각하여 매수를 결정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A씨는 건물을 팔기로 한 일이 생각나 사방으로 알아본 결과 자신이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여 B씨에게 어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자는 의사를 전달했고 B씨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 ①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법률행위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씨와 B씨 간 계약이 체결되면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군.
- ③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의 계약이 무효임을 안다는 점은 추인이 가능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군.
- ④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체결한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A씨가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그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겠군.